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11.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제안이유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해당 개정사항을 임실군의회 행동강령에 반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10만원→20만원)로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 기준 변경 ([별표 1])

3.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심사예고 : 5일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5조제3항제1호 관련) 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를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u>10만원으로 한다.</u>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u>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u>	3. ----- ----- ----- ----- ----- ----- ----- ----- ----- ----- ----- <u>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u> 나. ----- ----- ----- <u>경우에는</u> ----- ----- -----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
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
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
과해서는 안 된다.

<신 설>

다.·라. (생 략)

-----.

----- 단
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
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
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
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
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
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
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
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
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
다.

라.·마. (현행 다목 및 라목
과 같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

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